

일경험프로그램

● 사업목적

체험형

취업역량·구직의욕 고취가 필요한 자에 대해 NGO·공공기관 등에서 **단기간(30일 내외)** 직무 “체험” 중심의 일경험 제공

인턴형

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있는 자에 대해 취업연계가 가능한 민간 기업 등에서 **3개월간** 직무 “수행” 중심*의 일경험 제공

● 참여자 요건 및 지원내용

참여요건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일경험 지원이 필요한 자

지원내용

- ① 체험형: 월 2.1만원×최대 30일(구직촉진수당 동시지급)
- ② 인턴형: 기업 임금(협의사항) × 최대 3개월(구직촉진수당 미지급)

지원기간

참여기업은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참여자 유형과 직무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의 운영기간 및 시간 구성

- (체험형) 2개월 내 최대 30일, 1주 20시간, 1일 4시간 원칙
- (인턴형) 최대 3개월, 1주 30~40시간 내 참여자-기업이 협의

참여시기

국취 취업지원서비스기간(1년) 내에서 참여 가능

* 인턴형은 IAP 수립 후 2개월 도과시 참여 불가(3회차 구직촉진수당 받은 후 참여 불가)

참여자 지위

- ① 체험형: 수련생 지위 → 기업-참여자 간 협약서* 체결
- ② 인턴형: 근로자 지위 →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* 체결(4대보험 가입)

● 참여기업 요건 및 지원내용

참여요건

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(직전 월말) 중소·중견기업, 사회적 기업·협동조합 및 NGO·공공기관 등*

* 소비·향락업, 인력공급·파견업, 임금체불·중대재해 명단공표 사업주 등의 참여는 제한, 인턴형은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

지원내용

참여자 교육·관리 등 멘토링 수당 1명당 월 10만원 지급
- 인턴형의 경우 기업에게 참여자 1인당 최대 1,822,480원 지급

● 지원문의
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: 1350
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: www.moel.go.kr